

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1. 18.

발 의 자 : 마 숙 란 의원 외 4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5조, 제8조 제2항